공 개

의안번호	제 237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9. 2. (제 15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2.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각각 별지 1, 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 선진시장의 24시간 거래체계 전환에 맞추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장종료후 시간외접속매매 신설 (유가증권시장 개정안 제4조, 제16조, 제26조의2,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의4 / 코스닥시장 개정안 제4조, 제13조, 제21조의5, 제23조의3, 제27조의2)

□ 정규시장과 같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하여 시장참여자의 참여가 용이한 방향으로 시간외접속매매를 도입

□ 시간외접속매매시 접속매매로 인한 시장 안정 목적 제도 추가 정비

나. 기타 조문정비(유가증권시장 개정안 제5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34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의2 / 코스닥시장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6조의2, 제21조의3)

4. 참고사항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1>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2>

<별지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접속매매는 16시부터 20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0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절

제16조제1항 본문 중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원”을 “유동성공급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을 “상장지수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해당 유동성공급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회원”을 각각 “유동성공급회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를 “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시간외시장의 최초 체결가격 결정시에는 당일의 종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규시장”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으로,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각 시장의 최초 해당가격 결정 전에는 정규시장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간외시장은 당일의 종가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간외접속매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시간외접속매매) ① 시간외접속매매는 시간외접속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 대상 증권의 종류, 그 밖에 시간외접속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표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시장조성”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지표종목,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경우”를 “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국고채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딜러가 제출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을 위한 조성호가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고채권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② (생 략) ③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전산장애발생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생 략)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생 략)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에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8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20시---------- 시간외종가매매는 ---------- -- 시간외접속매매는 16시부터 20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0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제5조(휴장)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5조(휴장)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노동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①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해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①----------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①---------- 포함한다. 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

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해당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유동성공급 종목의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유동성공급회원---------- ---------- ---------- ---------- ---------- ---------- ---------- ---------- ---------- ---------- ---------- ----------. ------ 상장지수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 ---------- ---------- ----------.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1. ---------- ---------- 해당 유동성공급회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은 법 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이 2%(해외기초자산의 경우 5%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② 유동성공급회원----------.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이 2%(해외기초자산의 경우 5%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③ 유동성공급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유동성공급회원----------.

제26조의2(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① 거래소는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6조의2(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① ---------- ---------- ---------- ---------- ---------- ---------- ---------- ---------- ---------- ---------- ---------- -----.
1.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1. ---------- ---------- -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전의 가격(시간외시장의 최초 체결가격 결정시에는 당일의 종가를 말한다)---------- ----------
2.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 결정	2.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 ---------- ---------- ----------각 시장

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의 최초 해당가격 결정 전에는 정규시장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간외시장은 당일의 종가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간외매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각	제33조(시간외매매) ----------

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하고, 제2호의2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간외단일가매매	2. 시간외접속매매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시간외단일가매매) ①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	

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④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4(시간외접속매매) ① 시간외접속매매는 시간외접속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 대상 증권의 종류, 그 밖에 시간외접속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채딜러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55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재정경제부----------

를 말한다.	-------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3. ---------- ---------- ----------.
가. 국채증권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증권 지표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	가. -------- 재정경제부 ---------- ----------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조성호가"라 함은 지표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4. ---------- 시장조성------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6조(호가의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비지표종목,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56조(호가의 구분) ---------- ---------- ----------. ---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국고채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딜러가 제출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호가의 접수시간 및 방법) ① (생 략)	제57조(호가의 접수시간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딜러는 정규시장의 매매거	② ------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한

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스프레드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 이 경우 시장조성을 위한 조성호가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발행일전거래) ①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의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발행일 전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59조의2(발행일전거래) ① ---「국고채권 운영규정」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규시장 : 9시부터 15시 30분(제18조제1항제2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8시부터 9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제21조의5에 따른 시간외접속매매는 16시부터 20시(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0시 이후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6조”를 “제6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거래소시스템”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시간외접속매매) ① 시간외접속매매는 시간외접속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 대상 증권의 종류 그 밖에 시간외접속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를 “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시간외시장의 최초 체결가격 결정시에는 당일의 종가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규시장”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으로,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을 “해당 가격이 최초로 결정되기 전에는 정규시장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간외시장은 당일의 종가를”로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본문 중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③ ----------.
1. 정규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제18조제1항제2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1. 정규시장 : 9시부터 15시 30분---------- 15시 30분 ---- 해당 ---------- --- 9시부터 15시----------.
2. 시간외매매시장 :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2. 시간외시장---------- ------- 각 목의 --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로 한다.	가. ------ 시간외시장 : 8시부터 9시----------, ---------- ----- 8시 30분부터 8시 40분----------.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에 따른	나. ---------- : 15시 40분부터 20시---------- ---------- ---------- ----------, -------- 15시 40분부터 16시--------- ---------, 제21조의5에 따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오후 6시(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른 시간외접속매매는 16시부터 20시----------20시 이후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휴장)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시장을 휴장한다.	제5조(휴장)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3조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닥 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	제13조(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

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③ 제1항에 따라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해당 호가의 취소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호가의 효력정지가 해제되며 이 경우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한다.	③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기간중 <u>제26조</u>에 따라 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3. ---------- - <u>제6조 및 제26조</u>---------- ----------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① 회원은 회원시스템과 <u>거래소시스템</u>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의2(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① ---------- <u>코스닥시스템</u>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시간외단일가매매) ①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④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의5(시간외접속매매) ① 시간외접속매매는 시간외접속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 대상 증권의 종류 그 밖에 시간외접속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① 거래소는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18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	제23조의3(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① ---------- ---------- ---------- ---------- ---------- ---------- ---------- ---------- ---------- ---------- ---------- ------. 1. ---------- ----------

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직전의 가격(시간외시장의 최초 체결가격 결정시에는 당일의 종가를 말한다)---------- ---------- ----------
2.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제18조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 ---------- ---------- ----------, 해당 가격이 최초로 결정되기 전에는 정규시장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간외시장은 당일의 종가를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매매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접속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 ---------- ---------- ---------- ---------- ---------- ----------

족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생 략)	---------- ---------- ---------- ---------- ---------- ----------. ②(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6